

尹文涉¹⁾

OECD가 Frascati Manual
 Business Enterprise Sector) 가
 (BERD, Expenditure on R&D in the
 가

" " " 132 " " 13 " 가

가
 1.89% 3 1078 , '94 '94 4 3977 2.68%,

가 가 2~3% 70%

< 1 >

< 1 > ('93)

업종	과학기술처 조사결과('93)	상장회사 협의회 조사결과('93)
제조업전체	2.49%	1.73%
- 음식료품	0.85%	0.49%
- 의복모피	0.88%	0.15%
- 펄프종이	0.95%	0.23%
- 화학제품	1.58%	1.50%
- 비금속	1.36%	0.82%
- 제1차 금속	0.43%	0.88%
- 조립금속	1.07%	0.67%
- 기계장비	3.06%	1.23%
- 사무기계	3.03%	1.78%
- 영상통신	5.54%	4.70%
- 전기기계	2.68%	1.23%
- 의료정밀	4.77%	1.48%
광업	1.02%	0.30%
건설업	0.93%	1.00%

가

가

1

'94

2.68%

가 3

2.11%

'93

2,864

547

가

가

가 4

< 2 >

('94)

	과학기술처 조사결과	경영분석참고자료 공시 연구개발비
A사	6,853억 원	7,597억 원
B사	4,985억 원	2,129억 원
C사	3,037억 원	1,728억 원
D사	785억 원	456억 원

(< 2>).

가 A 가

가

가

(Expenditures on R&D)²⁾
가

가

5 , 6

가

가

가

가

가

"3)

"4)

가

OECD

가

가

가

가

가

=

가

가

+

가

가

가

가

500

가

< 3 >

OECD

항 목	OECD 기준	증권관리위원회의 연구개발 회계처리준칙
연구개발 활동범위	- 자체 연구개발활동(위탁연구제외)	- 응용연구개발 및 연구개발목적의 기술도입 및 위탁연구비
회계처리	- 해당기간내에 발생한 총 지출액	- 해당기간내에 발생한 총 비용액 · 경상적이 아닌 것: 이연자산으로 5년이내 삼각처리 · 경상적인 것: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 · 고정자산: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로 처리 · 구분불가능한 것: 제조원가로 처리
비목구성	- 인건비, 기타경상비, 기기장치, 토지건물	- 원재료비, 인건비, 감가상각비, 위탁용역비, 기타경비
기 타	- 지출금액에 대한 상환처리금지	- 이연자산 중 미상각액을 특허권 등의 과목으로 대체가능 - 연구개발투입, 중간산출의 상환가능

가

182

142

109

"

72

가

182

46%
OECD

83

가

가

59

가 가

가

16

가

OECD

70~80%가
OECD

20%

가

가 가

< 4 >

(단위: 기업 수)

구분	과조 통계와 동일함	과조 통계와 다름	계
회계처리 준칙 적용함	83	59	142
회계처리 준칙 적용안함	26	14	40
계	109	73	182

< 5 >

OECD기준	세 부 항 목	우리나라 기업의 처리현황		
		전부연구 개발로 취급	일부만 연구 개발로 취급	연구개발로 취급하지 않음
대부분 연구개발 활동으로 취급	시제품설계 제작	78%	14%	8%
	파이롯트플랜트 설계·제작	69%	18%	13%
특정연구프로젝트의 일환 및 연구소의 전담지원시만 연구개발로 취급	기술정보수집 서비스	69%	22%	9%
	해외전문가 자문	56%	22%	22%
	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	83%	11%	6%
추가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요구될때만 부분적으로 연구개발로 취급	시험생산	53%	24%	23%
	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	37%	25%	38%
	설계업무	59%	13%	28%
비연구개발활동으로 취급	기술도입	63%	15%	22%
	해외용역도입	52%	15%	33%
	품질관리 및 시험검사	31%	34%	35%
	특허 및 라이선스관리	59%	14%	27%
	일상적인 교육훈련	23%	32%	45%
	시장조사 및 소비자 조사	26%	26%	48%

	소비자 조사			
	자원탐사 및 시추	15%	18%	67%
	사업타당성 검토	28%	23%	49%

• 과기처 연구개발활동조사 응답기업 182개 중 유효응답의 비율

59% , 51%, 가 37%,
 , , 20~60% , , . (< 5>).
 .
 가 가 가 , 가 , 가
 . 가 가 가
 가 가 가
 【 】

- 1) 윤문섭, 장진규(1996),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의 측정방법개선 및 국제비교성 제고방안,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
- 2) 남영호(1996),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지표산정에 관한 연구,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
- 3) 과학기술처,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, 각년호

【주】

- 1)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에서는 조사표상에서는 연구개발비, 활동조사 보고서상에서는 연구개발투자로 영문표기로는 R&D expendit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.
- 2) 회계준칙상 “경상시험연구비”는 OECD기준의 경상지출(current expenditure)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의 경상비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전자는 동 준칙상에 규정된 경상적이 아닌것의 요건인 ① 특정한 제품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일 때 ② 관련된 비용의 개발적 식별이 가능할 것 ③ 관련 비용의 회수에 충분한 미래효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하며, 후자는 인건비, 원재료비, 간접지원비 등으로 자본적지출에 대비되는 지출을 뜻한다. 회계준칙상의 경상시험비라는 용어는 동준칙의 상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정되어 “경상연구개발비”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 준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업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세부항목에 표기된다.
- 3) 회계준칙상의 “시험연구비”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로 표기되며,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 이연자산의 세부항목으로 표기된다.

1) , (Tel: 02 - 250 - 3031)

2) R&D expenditures . ,

3) " " OECD (current expenditure)

가

, , , " "

4) " " ,

